



제 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 〉
■ 강경숙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1109호)

2025. 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김용규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	3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강경숙의원 등 11인
2. 발 의 일: 2025. 6. 26.
3. 회 부 일: 2025.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매 2년 마다 스포츠윤리교육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체육지도자가 재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재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스포츠윤리센터가 체육단체 및 학교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오기 등의 사유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학교에 있는 재교육 대상 체육지도자의 명단 통보를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에게 하도록 하고, 재교육을 실시하는 단체에 명단 통보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체계

적으로 관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등).

Ⅲ. 검토의견

1.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

가. 개정안의 요지

-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재교육 대상자 명단 요청 업무 수탁기관이 명단을 학교·체육단체 등이 아닌 교육감·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6, 제55조제4항제1호).

나.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생략) <u><신설></u>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u>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u>재교육을</u>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기	④ ----- ----- <u>재교육과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 명단 요청에 관한 업무를</u> ----- -----.
	⑤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기

간·내용·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간·내용·방법·절차, 제2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 명단 요청의 시기·방법 및 제4항에 따른 위탁----- -----.
제55조(과태료) ① ~ ③ (생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의6제2항을 위반하여 체육지도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한 자 2. ~ 4. (생략) ⑤ (생략)	제5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제11조의6제3항을----- ----- 2. ~ 4. (현행과 같음) ⑤ (현행과 같음)

다. 검토의견

- 현행법령상 자격검정에 합격하고 연수과정을 이수하여 체육지도자 자격증을 받은 자가 학교·운동경기부·체육단체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2년마다 스포츠윤리교육 관련 재교육을 6시간 이상 받아야 하며¹⁾,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체육지도자의 양성)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체육지도자 자격검정(이하 “자격검정”이라 한다)에 합격하고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이하 “연수과정”이라 한다)을 이수한 사람에게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자격증을 발급한다. 다만, 학교체육교사 및 선수(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프로스포츠단체에 등록된 프로스포츠선수를 포함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검정이나 연수과정의 일부(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은 제외한다)를 면제할 수 있다.

③ 연수과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구성된 스포츠윤리교육 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1년 범위 내 자격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²⁾³⁾).

- 또한, 문화체육관광부 고시에 따라 재교육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현행법 시행규칙에 따라 스포츠윤리센터장은 학교 등 재교육 대상자 소속 기관 등의 장에게 대상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⁴⁾.

2.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방지를 위한 예방교육

3. 도핑 방지 교육

4. 그 밖에 체육의 공정성 확보와 체육인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는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매 2년마다 제11조제3항에 따른 스포츠윤리교육의 내용이 포함된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의 대상·기간·내용·방법·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학교, 운동경기부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육단체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체육지도자로 한다.

1. 법 제5장에 따른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및 시·군·구체육회(이하 “지방체육회”라 한다), 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장애인체육회 및 시·군·구장애인체육회(이하 “지방장애인체육회”라 한다)

2. 경기단체

②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는 2년(직전의 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6시간 이상의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2) 「국민체육진흥법」

제12조(체육지도자의 자격취소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지도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2조의2에 따른 체육지도자 자격운영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7.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표4] 체육지도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제4항 관련)

1. 일반기준 <생략>

2. 개별기준

사. 법 제11조의6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서면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6개월/ 3차 위반: 자격정지 1년

3) ‘체육지도자 재교육 제도 및 현황’에 대해서는 [참고자료1] 참조.

4)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

○ 그런데 스포츠윤리센터가 학교·체육단체 등에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요청한 경우, 학교에서 재교육 대상자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하는 경우에도 명단 누락·오기 등으로 일부 체육지도자가 재교육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재교육 대상자 명단 요청 업무 수탁기관이 명단을 학교·체육단체 등이 아닌 교육감·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개정안에 따르면 개별 학교가 아닌 교육감⁵⁾이 학교별 재교육 대상자 명단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게 됨에 따라 체육지도자 재교육 업무가 보다 체계화되어 재교육 이수율이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6제3항에 따라 체육지도자의 재교육을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이하 “스포츠윤리센터”라 한다) 또는 인권 교육에 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재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업무를 위탁받은 재교육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⑧ 재교육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 대상자가 종사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재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체육지도자 윤리 및 인권의식 향상 재교육기관 지정 고시」

「국민체육진흥법」 제11조의6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 제6항에 따른 재교육기관으로 같은 법 제18조의3 제1항에 따른 스포츠윤리센터를 지정한다.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2조(교육·학예사무의 관장)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과학·기술·체육 그 밖의 학예(이하 “교육·학예”라 한다)에 관한 사무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사무로 한다.

제18조(교육감) ①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의 집행기관으로 시·도에 교육감을 둔다.

제20조(관장사무) 교육감은 교육·학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9. 학교체육·보건 및 학교환경정화에 관한 사항

문 의 처
02)6788-5375

현행	개정안	문체부 수정안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생략)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현행과 같음)	제11조의6(체육지도자의 재교육) ① (현행과 같음)
<신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교육을 받아야 하는 체육지도자의 명단을 교육감 및 체육단체 등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② ----- ----- ----- -----체육단체의장 ----- ----- -----.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교육을 문화체육관광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 -----재교육과제2항에 따른 재교육대상자명단요청에관한업무를-----.	④ ----- -----재교육(제2항에 따른 재교육대상자명단요청에관한업무를포함한다)을-----.

[참고자료1] 체육지도자 재교육 제도 및 현황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 체육지도자 재교육 제도

- (도입) '20년 철인3종경기 스포츠 분야 폭행사건 관련 감사 후속 조치로 입법화('21.6.9.시행)
- (내용) 체육단체 및 학교 등에서 체육 지도 업무에 종사하는 지도자에게 매 2년마다 재교육 의무 부여
- (수행기관) 스포츠윤리센터
- (미이행시) 행정처분
 - 1차 서면경고, 2차 자격정지 6개월, 3차 자격정지 1년

□ 재교육 현황

(2024.12.31.기준, 단위: 명)

재교육 대상연도 (교육기간)	대상자	교육연도	이수자	미이수자	이수율 (미이수율)
2022년 (2022~2023년)	13,715명	2022년	9,706명	1,696명	87.6% (12.4%)
		2023년	2,313명		
		합계	12,019명		
2023년 (2023~2024년)	3,032명	2023년	2,630명	277명	90.9% (9.1%)
		2024년	125명		
		합계	2,755명		
2024년 (2024~2025년)	30,329명	2024년	9,867명	2025년 재교육 완료 후 집계 예정	
		2025년	교육 진행 중		
		합계	9,867명		